

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5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2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정보화 사회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여성관련사업의 육성개발과 여성의 권익신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설치목적 및 조성방법 등을 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(안 제3조)
- 다.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관리·운영하도록 함 (안 제4조)
- 라.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 (안 제5조 내지 제8조)
- 마.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(안 제9조)
- 바.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중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,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함 (안 제10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·제22조·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34조
- 나. 지방자치법 제133조, 지방재정법 제110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 여성발전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

1. 사하구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②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의 본 예산에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

1.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
2.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
3.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
4.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
5.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

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,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

③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, 관리하여야 한다

④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한다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1.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
3.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여성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
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

1. 부구청장, 사회산업국장,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

2. 학계, 여성단체 등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

⑤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
제7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

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
제8조(회의참석 수당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

제9조(기금운용 계획)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0조(회계공무원)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

1. 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
2. 기금출납원 :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

제11조(기금결산)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

제12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사하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